

보도시점 2024. 3. 27.(수) 배포시점 배포 2024. 3. 27.(수)

방통위, (주)채널에이·(주)와이티엔· (주)연합뉴스티브이 재승인 의결

- 3사 모두에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팩트체크·취재윤리제도 강화 주문
- (주)채널에이, 콘텐츠 투자계획 개선하여 다시 제출 필요
- (주)와이티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 잘 이행토록 연계 조건 부과
- (주)연합뉴스티브이, 최다액출자자 연합뉴스와의 내부거래 개선 요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24년 3월 27일(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4년 3월 3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이하 ‘보도PP’) (주)와이티엔과 (주)연합뉴스티브이, ’24년 4월 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중편PP’) (주)채널에이의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작년 9월 3사의 재승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올해 1월까지 관련 현장조사와 시청자 의견청취를 실시하였다. 2월에는 방송·미디어, 법률, 회계 등 총 5개 분야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송법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5일(’24.2.19~23)동안 심사를 진행하였다.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주)채널에이는 652.95점, (주)와이티엔이 661.83점, (주)연합뉴스TV가 654.49점을 획득하여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을 충족하였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2023~2026년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22.9.21.)」에 따라 ‘재승인’을 의결하고 각 4년의 승인 유효기간을 부여하였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사업자별 현황에 맞는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하였다.

우선, 심사위원회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현을 위한 장치의 필요성을 비중 있게 제시함에 따라, ▲팩트체크 및 취재윤리 관련 제도와 교육 강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 제도 운영,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시사·보도 프로그램 공정성 진단 등을 공통 조건으로 부과하였다.

방송사별 개별조건을 보면, (주)채널에이의 경우 개선된 콘텐츠 투자계획을 방통위와 협의하여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이외에 방송 및 선거방송 심의규정, 외주제작비 산정·지급 및 아동·청소년 보호기준 준수 등의 조건은 지속적인 이행 필요성을 감안하여 '20년 재승인 때와 같이 유지되었다.

보도PP에는 보도의 공정성과 독립성 강화를 통해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는 취지로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하였다.

(주)와이티엔에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시 부과된 조건 등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방송사 경영 및 투자 계획을 최다액출자자와 협의하여 재승인 후 3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이행하도록 했다. 최다액출자자에 유리한 내용 또는 홍보성 기사를 보도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방송사의 재무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최다액출자자와의 내부거래를 금지하는 조건이 부과되었다.

(주)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해서는 최다액출자자로부터 독립하여 재정 건전성을 높이도록 하는 취지가 반영되었다. 우선, 방송사의 재무 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최다액출자자와의 내부거래 금지 및 관련 개선방안 제출이 조건에 포함되었다. 최다액출자자로부터의 기자·PD 직군의 직원 파견을 해소하고 '25년부터 (주)연합뉴스가 광고영업 대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도 부과하였다.

김홍일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의제 설정과 국민 여론 형성에 있어 종편·보도PP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면서, “이번 심사에서는 이러한 종편·보도PP의 공적 책임과 사회적 기여도를 제고 하되, 사업자의 경영권을 과도하거나 불필요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재승인 조건 등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방송사가 이를 잘 이행하는 것은 물론, 방송사 스스로도 품격 높은 콘텐츠 제작과 이를 위한 내부 체계 확립 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 이라 덧붙였다.

방통위는 향후 방송사들이 사업계획서와 재승인 조건 등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재승인 제도가 전체 방송 산업의 선순환 구도 형성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끝.

- 붙임 1. '2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PP 재승인 심사 결과 1부.
 2. '2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PP 재승인 심사위원 명단 1부.
 3. '2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PP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1부. 끝.

담당 부서	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미정 (02-2110-1430)
		담당자	사무관	윤영란 (02-2110-1431)
			사무관	이선아 (02-2110-1432)



(붙임1)

202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PP 재승인 심사 결과

심사사항 (배점 : 종편PP/보도PP)	(주)채널에이	(주)와이티엔	(주)연합뉴스 티브이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점/400점)	330.12	344.74	321.58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 사회·문화적 필요성 (210점/260점)	117.65	132.70	138.9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190점/160점)	99.80	86.30	88.40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100점/80점)	58.73	43.68	52.63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00점/100점)	51.10	58.80	57.10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50점/50점) -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	28.20	28.70	28.60
합계(1,050점)	685.60	694.92	687.21
최종 환산점수(1,000점)	652.95	661.83	654.49

(붙임2)

202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PP 재승인 심사위원 명단

분 야	이 름	주요 이력
심사위원장	강명현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방송·미디어	마정미	한남대 정치언론학과 교수
	이두희	성균관대 문화예술미디어융합원 수석연구원
	이상호	경성대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
법률	박애성	법무법인 래안 변호사
	이준복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부교수
경제·경영·회계	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문화산업학과 부교수
	김철희	한국공인회계사회 공공·비영리본부장(회계사)
	박인숙	한국공인회계사회 자율감리본부 본부장(회계사)
기술	이상운	동아방송예술대 방송기술학과 부교수
시청자·소비자	김기수	법률사무소 이세 변호사
	김성순	법무법인 한일 대표 변호사
	한상규	서울YMCA 본부장

※ 분야별로 가나다 순

(붙임3)

202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PP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 (주)채널에이

구 분	내 용
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 및 재승인 조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추가 개선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와 추가개선계획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추가개선계획이 우선함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를 위해 팩트체크 및 취재윤리 관련 제도와 교육을 강화하고, 종사자 등에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팩트체크 및 취재윤리 관련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추가 개선계획을 재승인 이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할 것 -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3. 방송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표이사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고, 사외이사와 감사는 최다액출자자(방송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특수관계자 포함)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 4. 방송관련 학회 등 복수의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시사·보도프로그램 등의 공적책임, 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또한 방송사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것 5.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4조, 제21조 제3항, 제25조, 제27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 제51조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재·보궐 선거 포함)의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내지 제20조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해당 선거별로 각각 2건 이하로 유지할 것 ※ '24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정제재 건수를 대상으로 함 - 다만, 개별 제재조치의 위반근거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과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등 복수인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건수에만 포함함 6. 협찬을 받은 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직접적인 효과나 효능을 다루는 경우에는 시청자들이 알 수 있도록 협찬 받은 사실을 반드시 고지 하되 해당 프로그램의 시작과 종료시점을 포함하여 최소 3회 이상 고지할 것

구 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고지 시 특정 브랜드나 회사를 연상시킬 수 있는 상품명이나 용역의 명칭, 제공업체 등을 노출하여 광고효과를 주지 말 것 - 또한, 관련 프로그램이 방송된 이후 7일 이내에 프로그램명과 협찬 받은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등을 방송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월의 이행 실적 자료를 매월 15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p>7. 방송프로그램의 품질향상과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투자에 관한 추가 개선계획을 재승인 이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마련하고 이를 이행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콘텐츠 투자금액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과 양식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결과 투자실적이 투자계획에 미달하였을 경우 미이행 금액은 추가 개선계획으로 제출한 투자계획에 이를 포함하여 이행할 것 <p>8. 외주프로그램 제작비 산정 및 지급, 저작권과 수익배분 등에 관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배포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 및 7월 31일까지 직전 반기 동안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p> <p>9. 최초 승인 주주구성 의혹과 관련하여 2020년 3월 18일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약약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권고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다액출자자의 방송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방송사의 대표이사를 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2. 최다액출자자로부터 방송사로 기자·PD 직군의 직원파견을 해소할 것. 재승인 후 3개월 이내에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 3. 보도·제작·편성 분야 간부 임명 시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것 4. 방송프로그램이 특정 장르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도별 균형 있는 제작과 편성을 하도록 노력할 것 5.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24.2.14. 개정)을 준수 할 것 6. 방송의 사회문화적 다양성 제고와 방송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집단·계층의 권익 증진을 위해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을 확대하고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주)와이티엔

구 분	내 용
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 및 재승인 조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추가 개선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와 추가개선계획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추가개선계획이 우선함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를 위해 팩트체크 및 취재윤리 관련 제도와 교육을 강화하고, 종사자 등에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팩트체크 및 취재윤리 관련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추가 개선계획을 재승인 이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할 것 -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3. 방송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표이사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고, 사외이사와 감사는 최다액출자자(방송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특수관계자 포함)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 4. 방송관련 학회 등 복수의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시사·보도프로그램 등의 공적책임, 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또한 방송사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것 5. YTN 경영 및 투자계획을 최다액출자자와 협의하여 재승인 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6. 최다액출자자(방송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특수관계자 포함)에 유리한 내용 또는 홍보성 기사를 보도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방송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것 7. 최다액출자자(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포함)와의 자금대여, 담보제공 등 방송사의 재무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내부거래를 하지 않을 것
권고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다액출자자의 방송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방송사의 대표이사를 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2. 그래픽 콘텐츠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승인 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

□ (주)연합뉴스티브이

구 분	내 용
<p>조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 및 재승인 조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추가 개선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와 추가개선계획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추가개선계획이 우선함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를 위해 팩트체크 및 취재윤리 관련 제도와 교육을 강화하고, 종사자 등에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팩트체크 및 취재윤리 관련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추가 개선계획을 재승인 이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할 것 -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3. 방송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표이사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고, 사외이사와 감사는 최다액출자자(방송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특수관계자 포함)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 4. 방송관련 학회 등 복수의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시사·보도프로그램 등의 공적책임, 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또한 방송사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것 5. 최다액출자자(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포함)와의 자금대여, 담보제공, 협약금 지급 등 방송사의 재무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내부거래를 하지 않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를 위한 내부거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승인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 6. 최다액출자자로부터 방송사로 기자·PD 직군의 직원파견을 해소할 것. 재승인 후 3개월 이내에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 7. 연합뉴스로부터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서에 제시한대로 2025년 이후에는 연합뉴스TV의 광고 영업을 연합뉴스가 대행하지 않도록 할 것
<p>권고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다액출자자의 방송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방송사의 대표이사를 하지 않도록 할 것 2. 그래픽 콘텐츠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승인 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